



제433회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 등〉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90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
3. 회부연월일 : 2026. 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실습 종료 후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은 단기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현장실습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현장실습의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채용 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 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 ----- ----- -----대학 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 4에서----- -----현장 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4.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설>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현장실습과 채용연계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현장실습 수료자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39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수립·시행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업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1)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11조의3)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¹⁾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의 현장실습 수업과 관련하여 산업수요에 따른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현장실습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5-36호)을 수립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1조의3에 따른 현장실습은 산업교육기관 중 대학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것으로, 직업계고 및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이 아닌 대학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적용되는 사항임.

- 개정안은 표준화된 운영기준에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업 등의 실습기관이 현장실습 수료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생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현재 현장실습이 기업의 단기 노동력 확보의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실제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은 등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점,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더라도 실습기관에 대하여 채용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채용 연계를 권고하는 수준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²⁾ 등을 통해 산업체와의 채용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학과가 아닌 경우 현장실습 등을 거친 학생에 대한 채용 연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다만, 현장실습 제도의 본래 목적은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실습수업이라는 점에서, 수업 단계에서부터 채용 연계를 운영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다소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021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개정으로 참여 기업 수가 감소³⁾한 점 등 이런 점이 참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될 여지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대학 현장실습 운영 현황(2024)>

(단위: 개, 명)

구 분			운영대학 수	이수 학생 수	
				총계	평균
표 준	이수 학생 수	전체	258	34,037	131.9
		대학	148	25,669	173.4
		전문대학	110	8,368	76.1
	참여 기업 수	전체	258	26,160	101.4
		대학	148	20,499	138.5
		전문대학	110	5,661	51.5
자 율	이수 학생 수	전체	160	6,122	38.3
		대학	91	3,296	36.2
		전문대학	69	2,826	41.0
	참여 기업 수	전체	160	3,513	22.0
		대학	91	2,143	23.5
		전문대학	69	1,370	19.9

3)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도입 및 의무보험 가입 등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개정 이후 현장실습 참여기업 수가 2020년 53,785개에서 2021년 16,873개로 감소하였음.

2) 현장실습 채용 연계 시책 수립·시행(안 제11조의4제2항)

□ 안 제11조의4제2항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현장실습과 채용 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 개정안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이 ①현장실습 참여 산업체로 하여금 현장실습 수료생 채용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②해당 시책을 통해 산업체에 대한 채용 연계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생들의 취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채용연계 사업 추진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3) 채용 실적과 재정 지원의 연계(안 제11조의4제2항)

□ 안 제11조의4제2항은 채용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장실습 수료자의 채용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등에 대한 동 법 제39조⁴⁾에 의한 지원과 연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이 채용 연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채용 실적을 재정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이나 실습기관이 현장실습 운영 단계에서부터 채용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 현장실습 참여 자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산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경우 기업의 채용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실적이 재정지원 평가에 반영될 경우, 지원이 더욱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 과정의 경우에 채용 실적을 재정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산학협력 촉진에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취업난 고려 시 현장실습과 취업 촉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운영기준에 채용 연계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실습기관이 채용에 대한 부담으로 실질적 참여가 위축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연계 시, 소외지역일수록 실습기관 발굴이 어렵고 기업의 인력 채용 여력이 부족하여 소외지역의 실습 참여 등이 제한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
